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6호 2014년 12월 pp.143~182
한국세무학회

고령화 사회의 연금 수급 선택 유인을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문성훈* · 김수성**

— <요 약>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후의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은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은 연금제도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공적연금제도를, 기업적 차원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개인적 차원에서는 연금저축제도를 통해 3층보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잦은 이직으로 인한 퇴직연금제도의 통산장치로서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하 ‘IRP’라 함)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3층연금 체계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금소득세제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부담으로 인하여 연금을 수령하기 보다는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 일시금으로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를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비하여 연금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과세의 세부담이 크게 된다. 이 때문에 퇴직자가 은퇴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종류가 많다면 전부 연금으로 수령하려고 하지 않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선택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것은 3층연금 체계를 통하여 노후소득을 확보하려고하는 정부정책에 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제도와의 통합적 시각을 통해 연금소득에 대하여 보다 강한 세제혜택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현행 연금소득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금수급으로 유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금제도는 보다 폭 넓은 세제유인을 통해 가입단계로부터 급여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금제

*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일시금보다는 연금의 선택을 유인하기 위한 연금소득과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2014학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201410-010)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mooncta@hallym.ac.kr, 010-9302-8453, 주저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세무학박사, mercury@tp.or.kr, 010-3243-1683,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4년 9월 4일 1차수정일 2014년 11월 14일 2차수정일 2014년 12월 11일
3차수정일 2014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22일

도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후 노후소득을 보장받기 위하여 연금의 수급유인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일시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으로 소진해버리기 쉬운 일시금의 수령을 방지하고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입단계와 운용단계 및 수령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의 대안으로 가입단계에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한도를 증가시켜 연금제도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고, 운용단계에서는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며, 급여단계에서는 세액공제의 한도를 증액하고 가급적 분리과세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연금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에서 제외하거나 연금소득을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일시금의 선택 유인을 감소시키고 연금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유인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통합적인 고찰을 통해 실질적인 세제 유인책(incentive)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통합적인 고찰을 토대로 고령화 사회의 연금수급 선택을 위한 연금소득 세제 개선안을 모색하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소득과세, 연금세제, 퇴직소득과세

I. 문제 제기

21세기에 들어와 우리나라도 고령화·장수사회가 됨에 따라 노후소득을 연금소득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향후 연금을 통한 소득은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는 퇴직연금 상품에 별도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한 바 있었다. 현행 소득세법을 살펴볼 때 가입단계에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구분 없이 4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불입액의 12%로 공제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개인연금 이외의 퇴직연금에 불입액의 한도를 증가시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별도로 부여할지를 고심하고 있다.¹⁾ 관련 부처에서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분리하여 퇴직연금에 대해서 한

1) 2014년 8월 27일에 발표한 2014년 개정세법(안)에 의하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연금과 별도로 퇴직연금에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 퇴직연금의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추가 신설하였다. 현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통합하여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퇴직연금 납입분 300만원에 대하여 12%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하도록 하였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통합하여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다. 단, 개인연금만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400만원을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하지만, 700만원 한도의

도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의 확산을 위해서는 실로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기존 연금저축의 400만원 불입액 한도 이외에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로 세액공제의 한도를 연간 300만원으로 인상하였지만, 아직도 세제의 유인책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입단계에서부터 급여 단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세제의 유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을 비롯하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3층 노후보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각각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아직까지도 저조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수준은 2013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가 470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속적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²⁾

이러한 저조한 도입율의 원인에는 퇴직연금제도 시행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합리한 연금소득 과세체제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가입자의 유인책(incentive)이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행 연금소득세제가 퇴직소득세제보다 세부담이 높기 때문에 제도가입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인 사적연금을 가입하려는 욕구(needs)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여된 세제유인책의 효과 또한 크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³⁾

또한,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연금의 선택유인이 크지 않게 되었다. 2009년부터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더욱 공적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된 상황 하에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에 가입하려고 하는 유인은 줄어들게 되었으며, 연금소득합산으로 인하여 과세되는 연금소득세 부담이 분류과세로 과세하는 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의 세부담보다 크기 때문에 연금선택보다는 일시금 선택의 유인이 더욱 커지게 된 실정이다. 통상적으로 연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2015년도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계 700만원을 불입하였을 경우 2016년 연말정산때 약 84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 2) 전체 상용근로자 1,016만명 대비 퇴직연금 가입률은 46.3%에 그치고 있다.
- 3) 현행 퇴직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소득분류가 다르게 됨으로 인해 퇴직자는 과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현행 연금소득세제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부담으로 인하여 연금을 수령하기 보다는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 일시금으로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를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며, 공적·퇴직·개인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각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비하여 연금소득의 세부담이 크게 된다. 퇴직소득세는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각각의 일시금에 대하여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퇴직자가 은퇴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종류가 많다면 전부 연금으로 수령하려고 하지 않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선택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가 일시금으로 선택하는 경우보다 세제상 불리한 점이 많을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가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수준을 벗어나 고령화사회의 주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을 선택하게 되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매월 일정액의 소득이 보장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담 또한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연금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일시금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은퇴시점부터 사망시점까지 여생동안에 지출할 소득의 재원으로 일시금을 사용하기 보다는 자녀의 결혼자금 등을 비롯한 사업자금과 생활자금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시금보다는 연금의 선택을 하도록 이를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고령화사회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원의 보장은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의 세제지원이 중요한 것이다. 정부는 노후생활 자금의 확보를 위해서는 가급적 은퇴시점에 수령하는 급여의 유형을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선택하도록 보다 강력한 세제정책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정부입장에서 볼 때 은퇴시점에서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선택하게 되면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제반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다른 곳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 그러므로 은퇴후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생활자금으로 소진해 버리지 않도록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금의 선택을 유도하여 진정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간과하였던 문제점을 바탕으로⁵⁾ 우리나라의 연금소득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검토하고, 연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연금수급 선택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Ⅱ장에서는 현행 연금제도의 개요 및 연금소득 과세체계를 살펴보았으며, 제Ⅲ장에서는 현행 연금소득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적·퇴직·개인연금의 제도와 연금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우리나라 연금세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현행 연금 관련 세제의 개선방안을 살펴본 후 제Ⅴ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4)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목적은 현행 퇴직금 제도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데 있다. 각 개인의 노후생활 소득보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부의 역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부의 세수지원은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이고, 정부의 예산을 다른 부문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그간의 선행연구로는 주로 퇴직연금의 조세지원에 대하여만 살펴보았다. 김진수·김재진(2007)과 김석범(2008)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김수성(2010)은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소득과세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김진수·배준호(2006), 문성환(2007), 황규영(2007)도 퇴직연금의 정착을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을 중심으로 현행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퇴직연금의 세제에 대하여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세가지를 함께 연구대상으로 하여 일시금보다는 연금의 선택을 유인하기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 것이다.

II. 현행 연금제도 유형 및 연금소득 과세체계

1.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의 연금제도 유형과 현황

가. 노후소득보장의 3층 보장체계

사회보장의 일환인 연금제도는 그 성격이나 기능상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크게 공적연금과 퇴직금, 그리고 일반저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점차적으로 퇴직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져 가는 상황 하에서 근로형태를 변형시켜 계약직화 및 연봉제 제도로 전환하고 있어 정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비책으로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기업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퇴직금을 근간으로 성립되는 퇴직연금제도와 연금저축 형태를 띠고 있는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의 통산장치로서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하 ‘IRP’라 함)이 있다. 이 중에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일반 민간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근속연수 만큼 일정소득을 퇴직 후에 지급받는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다. 반면,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퇴직금 제도가 없는 대신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조하는 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 등을 지급 받는다.

또한, 기업연금인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근속연수에 따라 1개월의 봉급액을 퇴직금으로 사외적립하여 퇴직연금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은퇴시점에 일시금이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그리고 사적연금으로 퇴직연금 이외에 개인연금이 있는데 통상 연금저축이라고 한다. 개인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연금저축액의 일정비율을 공제받고 이를 지급 받을 경우에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불입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외에 사적연금의 하나로서 직장 이전시에 퇴직연금의 유지를 위한 통산장치로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마련하고 있다. IRP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직장 이동성 및 단기근속자의 증가와 연봉제의 확산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 자금으로 소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장을 이전하더라도 퇴직금을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통산장치로 설치한 제도를 말한다.

나. 3층보장체계에 따른 연금시장의 규모와 현황

(1) 3층연금의 규모와 추이

우리나라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⁶⁾ 이에 따라 노후의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3층 보장체계에 의한 연금시장의 규모추이를 살펴볼 때 퇴직연금시장은 2012년과 2013년에 대폭 증가하였으며, 개인연금시장은 매년 평균 1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실현하고 있다. 반면 퇴직(신탁)보험은 2011년부터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층보장체계에 따른 현행 연금시장의 규모와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3층연금 보장체계에 따른 연금시장 규모 추이

(단위 : 십억원)

구 분	주 체	연금의 종류	적립금 규모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공적연금	국가	국민연금	235,425	277,642	323,991	362,112	392,333	423,122
사적연금	기업 (개인)	퇴직(신탁)보험	27,096	23,355	16,001	4,370	1,867	1,722
		퇴직연금	6,612	14,025	30,307	49,985	67,346	84,300
	개인	개인연금 (세제적격 ¹⁾)	46,277	51,919	59,614	68,159	78,812	91,131
		개인연금 (세제비적격 ²⁾)	70,962	83,869	98,380	108,951	137,172	172,702
합 계			386,372	450,810	528,293	593,577	677,530	772,977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및 제86조의2에 의한 연금저축

2) 은행의 노후생활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 보험사의 일반 연금보험, 변액연금

3) 2013년말의 개인연금 적립금 규모는 추정치임.

2013년도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적립된 기금규모가 423조원이며 국민연금 이외에 사학연금기금의 규모가 약 14조원이고, 공무원연금기금은 4조, 군인연금은 기금이 약 4천억원이 있다. 최근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반면,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태동한 이후 퇴직보험(신탁)은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한 주된 이유로 퇴직(신탁)보험의 효력은 201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기 때문이다.⁷⁾ 더 이상의 세제혜택이 폐지되자 적립금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퇴직(신탁)보험은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금을

6)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초과한 사회를 고령화사회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7.2%를 초과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제7379호) 제2조.

사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기존 퇴직(신탁)보험은 2005년 12월부터는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으며 기존 가입회사는 2010년도까지만 납입 등 유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2011년부터는 납입은 불가하며 인출은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및 퇴직급여 지급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적립금 규모가 급격히 감소된 것이다.

2013년말 기준으로 총 연금의 규모는 대략 773조원으로 구체적인 연금시장의 규모와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현황 등에 대하여는 하단에서 별도로 기술하고자 한다.

<표 2>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단위 : 십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민연금(A)	219,624	235,425	277,642	323,991	362,112	392,333	423,122
퇴직(신탁)보험 (B)	보험	21,496	21,821	18,461	12,241	2,900	1,254
	신탁	5,149	5,275	4,895	3,760	1,469	468
	소계	26,645	27,096	23,356	16,001	4,369	1,722
퇴직연금(C)	2,755	6,612	14,025	29,147	49,916	56,366	84,299
개인연금(D)(세제적격)	41,694	46,277	51,919	59,614	68,159	78,812	91,131
개인연금(E)(기타)	66,351	70,962	83,869	98,380	108,951	137,172	172,702
사적연금(B+C+D+E)	137,445	150,947	173,169	203,142	231,395	274,216	349,854
총 계 (A+B+C+D+E)	357,069	386,372	450,811	527,133	593,507	666,549	772,976

주) 금융감독원 복합금융서비스국 연금팀 보도자료 참조

또한, 개인연금의 연도별 추이는 다음 <표 3>과 같다. 2013년 9월말 현재 퇴직(신탁)보험의 적립금은 1조 7,229억원으로 퇴직(신탁)보험 적립금은 생보권역(58.8%)에 가장 많이 남아 있으며, 은행권역(27.1%) 및 손보권역(14.0%)에도 일부 잔존하고 있다.

<표 3> 퇴직(신탁)보험의 연도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규모	규모	증감율	규모	증감율	규모	증감율	규모	증감율
퇴직 보험	생보	159,383	107,309	△32.7	24,163	△77.5	10,911	△54.8	10,136	△7.1
	손보	25,223	15,098	△40.1	4,841	△67.9	2,604	△46.2	2,410	△7.5
	소계	184,605	122,407	△33.7	29,004	△76.3	13,515	△53.4	12,546	△7.2
퇴직 신탁	은행	48,798	37,566	△23.0	14,684	△60.9	5,143	△65.0	4,675	△9.1
	자산운용	148	38	△74.3	9	△76.3	8	△11.1	8	—
	소계	48,945	37,604	△23.2	14,693	△60.9	5,151	△64.9	4,683	△9.1
총 계		233,551	160,011	△31.5	43,697	△72.7	18,666	△57.3	17,229	△7.7

※ 복합금융감독국 연금감독팀 2014년 2월 3일자 자료를 참조함.

(2) 퇴직연금제도의 총 적립금 규모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제도 시행 이후 양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퇴직연금 총 가입자수는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437.7만명으로, 이 중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s, 이하 'DB'라 함.) 가입자가 2,770천명(63.3%)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 수가 많은 대기업들이 DB 또는 DB&DC를 채택하고 있으며,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s, 이하 'DC'라 함.) 가입자가 DC형을 선택한 근로자는 미미한 데 기인하고 있다.

2013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총 규모는 84조 2,996억원이며, 퇴직금 추계액(약 152.1조원 추정) 대비 퇴직연금 적립률은 55.4%이다. 총 퇴직금 추계액은 전체 상용근로자 수(10,159천명), 월평균급여(2,454천원), 평균근속연수(6.1년)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 규모는 다음 <표 4>와 같다. DB형이 60조 6,573억원으로 72.0%를 차지하였고, DC형 16조 9,114억원, 개인형 IRP형 6조 368억원, 기업형은 6,940 억원의 순(順)이며, 유형별 점유율로 볼 때, 적립금액 기준으로 DB형의 비중이 가장 높고 DC형, 개인형IRP, 기업형IRP 순(順)이다.

<표 4>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DB형	DC형	기업형IRP ⁸⁾	개인형IRP ⁹⁾	합 계
적립금	606,573	169,114	6,940	60,368	842,996
(비율)	(72.0)	(20.1)	(0.8)	(7.2)	(100.0)

주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 참조, ()안은 각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3) 개인연금제도의 총 적립금 규모 및 가입자 규모 현황

현재 개인연금 가입자는 약 850만명으로 이는 20~60세 인구인 약 3천만명의 약 30%에 해당한다. 현재 개인연금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 연금저축¹⁰⁾과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비적격연금(소득공제 없고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 비과세)이 이에 해당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약 400만명, 비적격연금 가입자는 약 550만명으로 추정된다. 개인연금의 적립금은 2012년말 기준 약 215조원으로 공·사 전체 연금 적립금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연금저축은

8) 기업형 IRP는 적립 IRP로 DB형과 DC형 또는 퇴직IRP에 가입된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IRP를 추가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기업형 IRP, 적립 IRP를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9) 개인형 IRP는 퇴직 IRP로 퇴직금 수령후 60일 이내에 IRP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개인형 IRP, 퇴직 IRP를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10) 연금저축은 일정요건 충족시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금액은 연간 1,200만원 한도이다.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저축성 금융상품으로 은행, 자산운용사, 생보, 손보사가 취급하고 있으며, ① 5년이상 납입, ② 납입보험료 1,800만원/年 이하, ③ 만55세 이후 10년이상 연금수령의 세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78.8조원이며, 비적격연금은 137.2조원 가량이다. 다음 <표 5>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회사의 개인연금 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5> 연금저축 및 개인연금 보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적립금	적립금	증감율	적립금	증감율	적립금	증감율	구성비
연금저축(세제적격)	519,186	596,140	14.8	681,587	14.3	788,117	15.6	11.6
개인연금(세제비적격)	838,690	983,796	17.3	1,089,511	10.7	1,371,723	25.9	20.3

2. 연금소득의 과세방식과 급여의 종류

가. 연금소득 과세방식의 유형

연금소득 과세방식은 크게 세가지의 과세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¹¹⁾ 국제적으로 검토되었던 연금소득 과세방식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이 미드 방식(Meade Committe), 블루프린트 방식(Blueprint Committe), 카터 방식(Carter Committe)의 세가지가 있다.¹²⁾ 이 세가지 과세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연금현가는 달라지게 되는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연금소득과세는 카터 방식에 의한 과세체계를 이루고 있다.

미드 방식은 전통적인 과세방식으로서 공평한 소득과세를 설계하기 위한 이론적 지침으로서 전통적으로 포괄적 소득과세를 중요시 해 온 Haig-Simons의 고찰방법을 따른 것이다. 영국의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미드 보고서』는 포괄적 소득과세의 원칙에 비교적 충실한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 과세취급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¹³⁾ 우선, 사업주가 부담한 각출금은 그 사용자의 손금에 산입하되,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변형으로 보아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반면, 근로자 본인이 각출한 부담금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연금적립금의 운용수익은 원칙적으로 발생시에 연금수급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각출 및 적립단계에서 과세가 이루어

11) 社會保障研究所, 1993, 『リーテイソクス日本社會保障 3 年金』, 有斐閣, pp.280~284.

12)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소득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연금소득 과세방식에 관한 여러 보고서 가운데 연금세제의 개혁방향에 대한 세 가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연금소득의 과세방식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연금소득 과세제도를 고찰함에 있어서 1966년의 『카터 보고서(Carter Committe)』와 1970년의 미국 재무성 보고서인 『블루프린트 보고서(Blueprint Committe)』 또는 영국의 『미드 보고서(Meade Committe)』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13) 『Meade Committe』, The Structure and Reform of Direct Taxation. 1978, p.142.

졌기 때문에 연금급부에 대하여는 신규운용수익 부분을 제외하고는 과세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블루프린트 방식을 들 수 있다. 미국 재무성은 『근본적 세제개혁을 위한 청사진 (Blueprints For Basic Tax Reform)』이라는 보고서를 다음과 같은 연금세제 취급방안을 제안하게 되었다.¹⁴⁾ 우선,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출액은 사업주의 사업소득 산정상 경비로서 인정되지만 종업원을 위하여 대신 부담한 각출액을 피용자의 과세대상소득에 산입하지 않는다. 반면, 피용자 본인의 각출은 과세소득의 산정에 있어서 소득공제를 인정한다. 또한 연금적립금의 운용수익은 피용자에게 배분이 가능한 경우는 피용자소득으로서 과세하고, 배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 영역으로 과세한다. 그리고 연금급부는 전액을 피용자의 소득으로서 간주하여 과세대상에 산입한다.

블루프린트 방식은 기금이 매년 적립되어 운용이익이 발생될 때 이를 순자산의 증가로 보아 과세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⁵⁾ 그러나 적립금 운용이익의 일괄과세는 분명히 개인소득세의 원칙으로 보면 모순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카터 보고서』가 발간되게 되었다.¹⁶⁾

카터 방식은 위의 두가지 방식과는 달리 사업주각출·피용자각출·연금적립금 운용수익 모두 과세를 이연하고, 연금급부 단계에서 급부의 전액을 수급자의 과세소득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다¹⁷⁾. 캐나다의 『카터 보고서』는 위의 두가지 보고서와는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카터방식을 2002년부터 채택한 것이다. 카터 방식에서는 사용자가 각출한 부담금은 그 사용자의 손금에 산입하지만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근로자 본인이 각출한 부담금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또한, 연금적립금의 운용수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으며 연금급부는 전액을 수급자의 소득에 산입하여 과세한다. 연금소득과세의 방식은 다음 <표 6>과 같이 정리된다.

<표 6> 연금소득 과세방식의 상호비교

구 분	미드 방식 (Meade Committe)	블루프린트 방식 (Blueprint Committe)	카터 방식 (Carter Committe)
사업주각출	경비로서 공제 급여로 보아 과세	경비로서 공제 급여로 보지 않음	경비로서공제 급여로 보지 않음
피용자각출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소득공제	소득공제
적립금운용수익	개인베이스과세	과 세	비과세
연금급부	비과세	전액과세	전액과세

14) 『Blueprints For Basic Tax Reform』, Bradford, 2nd edition, 1984, pp.52~53.

15) 이 방식은 현행 일본의 특별법인세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적립자산에 대하여 일정부분 일괄과세 하고 있다.

16) 『카터 보고서(Carter Committe)』는 보고서의 일종으로 카터 방식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17) 『Royal Commission On Taxation Vol 3, Taxation On Income』1966, pp.421~427.

나. 우리나라 연금소득 과세 개요

(1) EET방식의 연금소득 과세체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세제는 200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급부시에 과세되고, 부담금 납부시에 전액 보험료공제를 받도록 되었다. 우리나라 현행 퇴직연금 과세체계는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과세방식인 미드 방식, 블루프린트 방식, 카터 방식 중에서 캐나다의 카터 보고서에 의하여 EET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본적으로 부담금 적립시에 소득공제(exempt)하고, 운용단계 수익은 비과세(exempt)하며, 연금으로 수급시에는 과세(tax)하는 형태를 말한다. 현행 개인연금 과세체계는 2001년에, 공적연금과세 체계는 2002년에 TEE의 형태에서 EET의 과세체계로 전환되었다. 연금소득 과세원칙의 정립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게 되는데, 해외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EET의 과세형태를 따르게 되었다.¹⁸⁾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연금소득 과세를 가입·운용·급부 단계로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부담금 불입단계의 세제는 다음과 같다.

공적연금의 부담금 불입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은 전액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이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데,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00만원으로 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퇴직연금 DC형+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연간 4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¹⁹⁾ 최근에는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여 불입액의 12%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현행 공적연금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일시금 선택이 불가능한 반면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민연금가입자는 연금소득과세만 있게 되고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 퇴직연금제도의 수령방법은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의 두가지 선택이 가능하며,²⁰⁾ 특수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며 연금형태로 수급시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된다.²¹⁾

18) T는 소득세 과세를 의미하며 E는 소득공제(세액공제)나 비과세를 의미하고 있다.

19)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퇴직연금의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4년 개정세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로 300만원을 신설하였다. 현행 세법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통합하여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15.1.1 이후 퇴직연금 납입분부터 12%를 세액공제하여 연간 36만원까지 추가로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20) 연금 수급자격 기준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이며, 연금의 지급기간은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2) 개인형퇴직연금의 세제유형 비교

개인형퇴직연금란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퇴직급여(명예퇴직수당 포함)를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에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이직시에 과세하지 않고 실제 은퇴시점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시에 과세하는 제도이다.²²⁾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빈번한 직장 이동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연봉제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 되었다.²³⁾ IRP는 퇴직소득보다는 연금소득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55세 이전의 퇴직소득세를 이연하여 55세 이후의 연금소득으로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연금과 일시금의 종류

(1) 3층연금제도의 일시금과 연금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일시금과 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특수직역연금은 제도의 명칭만 상이할 뿐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와 금액은 동일하며 과세되는 소득 또한 동일하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일시금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연금소득과세만 있는 반면, 특수직역연금에는 일시금 선택이 가능하여 연금소득과세 이외에 퇴직소득 과세도 있게 된다.

퇴직소득이 부과되는 급여는 일시금 성격의 급여와 퇴직수당, 퇴직금제도가 있다. 별도로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연금과 일시금으로 각각 나누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시금으로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제 과세대상은 퇴직연금일시금·

21)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총 연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1,2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의 선택이 가능하며, 일정 한도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인정한다.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22) IRP는 개인이 소득세 과세이연이라는 우대조치를 받으면서 퇴직시까지 저축이 가능한 제도로 미국에서 1974년 ERISA법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원래의 목적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업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노후소득의 보완수단이었으나, 1981년 이후에는 사업자가 기업연금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은 종업원별로 별도계좌가 유지되지 않아 중간퇴직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통산성 혹은 이동성이 제약받는데 IRP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3) 최근 직장이동이 빈번하여 평균 근속기간이 5.6년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소액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사례가 많았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퇴직수당 등 4종에 한한다. 우리나라 공적연금 급여종류별 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연금 일시금 지급형태의 급여 종류 및 과세

급여 종류		공무원(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과세여부
퇴직급여	퇴직일시금	○	○(반환일시금)	○(퇴역일시금)	퇴직소득
	퇴직연금일시금	○	—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소득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소득 연금소득
퇴직수당		○	퇴직금 수령	○	퇴직소득

주) 각 공적연금제도의 연금법령(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을 참조함

반면, 퇴직·개인·IRP·연계급여의 연금과 일시금의 과세 형태는 다음 <표 8>과 같다. 공적 연금의 유형에 따라 퇴직연금의 가입여부는 달라지게 되며, 연금을 선택하느냐 일시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연금소득과세와 퇴직소득과세로 분류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으로는 연금 저축의 경우 일시금을 선택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퇴직소득세보다 세부담이 높게 나타난다.

<표 8> 퇴직·개인·IRP·연계급여의 연금과 일시금의 과세 형태

가입유형		공적연금			비 고	과세여부
		특수직역 연금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	연계연금 가입자 ²⁴⁾		
퇴직 연금	일시금	—	○	○	언제든지 일시금 선택	퇴직소득
	연금	—	○	○	10년이상 가입, 55세 5년이상 연금선택	연금소득
연금 저축	일시금	○	○	○	10년이상 가입, 언제든지 일시금 선택	기타소득
	연금	○	○	○	55세이상 5년이상 연금선택	연금소득
IRP	일시금	○	○	○	언제든지 일시금 선택	퇴직소득
	연금	○	○	○	55세이상 5년이상 연금선택	연금소득

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참조함.

(2) 퇴직연금 형태별 지급 현황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달리 일시금 수령이 많

24) 연계연금가입자는 65세 이상일 경우에만 연금선택이 가능하다.

아 아직까지도 연금수급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과 같이 일시금의 수령 보다는 연금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2005년 실시된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연금선택을 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연금의 선택보다는 일시금 선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퇴직연금제도의 연금 선택과 일시금 선택현황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 분	일시금수령		연금수령		합 계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12년 상반기 (비중)	71,597 (97.9)	7,709 (99.8)	1,501 (2.1)	19 (0.2)	73,098 (100)	7,728 (100)
12년 하반기 (비중)	55,791 (96.6)	6,437 (99.6)	1,955 (3.4)	26 (0.4)	57,746 (100)	6,463 (100)
13년 상반기 (비중)	78,539 (96.0)	19,790 (99.8)	3,231 (4.0)	39 (0.2)	81,770 (100)	19,829 (100)
13년 하반기 (비중)	54,211 (92.3)	7,428 (99.0)	4,514 (7.7)	74 (1.0)	58,725 (100)	7,502 (100)

주)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

2013년 중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14만명)들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일시금 수급자는 132,750명(94.48%), 연금 수급자는 7,751명(5.52%)에 불과한 것이다. 2012년과 2013년을 상반기 및 하반기로 나누어 보면 연금수령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금 수령시 세제혜택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 살펴볼 때 2013년 중 55세 이상 퇴직자의 연금선택 비중은 은행권역이 3.1%로 가장 높고 생보 2.1%, 손보 2.0%, 증권 1.3% 순이다.²⁵⁾

이를 통해 살펴볼 때 국민들의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이 제도 시행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급여 가운데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비율은 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시에 지급되는 퇴직금처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²⁶⁾

25) 2013년 권역별 일시금·연금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

구 분	은 행	생 보	손 보	증 권	합 계
일시금	19,709(91.4)	3,297(91.3)	2,197(95.3)	1,053(88.2)	26,256(91.58)
연 금	1,849(8.6)	314(8.7)	108(4.7)	141(11.8)	2412(8.42)
합 계	21,558	3,611	2,305	1,194	28,668

26) 퇴직연금제도는 중도해지가 많고, 연금보다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여 실제 노후자산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퇴직연금 IRP 만기유지율은 14%에 그치고 있으며, 개인연금 10년차 가입유지율은 52%에 그치고 있다. 반면, 퇴직연금 수급 형태를 살펴볼 때 금액기준으로 일시금은 9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연금은 8%에 그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2013)의 유형별 퇴직급여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3년도 1/4분기 55세 이상 퇴직자에게 지급된 퇴직급여가 1조 5,689억원 가운데 연금 형식으로 지급된 금액은 17억원(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3년은 연금선택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2013년 4분기 중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2.9만명)의 대부분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였다. 일시금 수급자는 91.6%(26,256명)이며, 연금 수급자는 8.4%(2,412명)로 낮지만 점차 연금선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 퇴직급여 수급자 중 연금 수급자 비중은 2013년 3월에는 3.7%에 그쳤지만, 5.5%(2013년 6월) → 7.0%(2013년 9월) → 8.4%(2013년 12월)의 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연금의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가입자에게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급여를 연금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바, 특수직역연금제도 가입자로 하여금 일시금의 연금화 선택을 강하게 유인할 필요가 있다.

III. 연금소득 과세단계별 문제점

1. 가입단계에서의 세제유인 미흡에 대한 문제점

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추가가입 세제 유인 미흡

2014년도부터는 기존에 유지해오던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되게 된다. 이에 따라 세제적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도 바뀌게 되었다.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바뀐 근본적인 원인은 소득에 따른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연금 가입자의 세금부담은 과거에 비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연금의 추가 가입과 가입의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세법 개정은 연금저축의 가입과 유지 및 납입액에 대하여 개인연금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 그리고 개인연금사업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인연금의 자산이 줄어 들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가입자들에게 은퇴후의 노후소득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세제절감 목적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개인연금을 가입하였던 상당수의 가입자가 개인연금 가입을 꺼려할 것으로 보인다.

나. DC형과 기업형 IRP의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 미흡

현행 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볼 경우 DC형 퇴직연금과 기업형 IRP에는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미흡한 실정이다.²⁷⁾ 2011년 이후 개인연금 가입자는 납입액에 대하여 타 연금

27) IRP는 크게 '기업형 IRP'와 '개인형 IRP'로 나뉜다. 이 중 흔히들 말하는 IRP는 개인형을 말한다. 개인

불입액과 합산하여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DC형 퇴직 연금에 있어서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연금저축과 합하여 연간 400만원으로 낮은 수준이며, 기존의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가 24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추가 부담금에 대한 유인 효과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²⁸⁾ 기존에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이미 240만원의 공제를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더 이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추가 납부할 세제의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²⁹⁾

다. DC형과 기업형 IRP의 근로자 추가납입에 대한 한도 규정 설정의 문제점

IRP의 가장 큰 매력은 퇴직금을 IRP계좌에 가입하여 퇴직시점을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연금 개시 시점인 만 55세 이전에는 일반 금융상품보다 중도해지가 훨씬 까다롭다. 더불어 세제 혜택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6~38%를 내야 한다. 하지만 IRP에 가입하면 퇴직소득세가 인출 시점까지 이연된다. 또한 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은 인출 시점에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는데 대체로 퇴직소득세가 이자소득세보다 낮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더욱이 정기예금은 이자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이자소득세(15.4%)를 떼고 자금을 운용하지만, IRP에는 이자소득세가 없어 자금운용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대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장점 또한 존재한다.

IRP는 과세이연을 통하여 노후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특징이 있다. IRP에 운용할 경우 납입시점에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퇴직금 전액을 모두 운용할 수 있고 운용도중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운용수익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금을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을 이직시 과세하지 않고 과세시점을 은퇴시점으로 이연하여 퇴직금과 운용수익이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수령 시점으로 이연된다. 그러나, 이러한 IRP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자에게 있어서는 여유자금의 부족하기 때문에 IRP에 추가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고액의 소득자는 여유자금을 기업형 IRP나 DC형에 추가납입을 통해 조세전략 차원에서

형 IRP는 퇴직연금 개시 연령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개인이 퇴직 일시금을 받을 때 지속적으로 적립·운용할 수 있는 개인계좌다. 기업형 IRP는 DC형과 마찬가지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 28) DC형이나 사업형 IRP의 경우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으로 소득공제한다. 연금저축 추가 불입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최초에 240만원이었는데, DC형과 사업형 IRP를 시행하면서 한도를 증액하였다. 즉, 기존에 공제받는 개인연금한도액과 합산하여 퇴직연금 불입액의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가, 2010년말 개정세법에 의하여 공제한도를 연간 4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로 볼 때, 기존에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소득공제의 한도는 기존에 한도공제를 적용받고 있던 240만원을 제외한 160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 29) 우리나라의 세제혜택은 해외사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자료는 류건식의 1(2012)의 자료를 참조할 것.

세후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현재 근로자의 추가납입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근로자는 매우 적은 수준으로, 근로자의 개인부담금 납입이 저조한 것은 이에 대한 세제혜택 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가입자 개인부담금(추가 납부금)은 전체 적립금의 1.7%인 12,484억원에 불과하다.³⁰⁾ 추가 적립금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고액 근로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고액을 DC형이나 IRP에 추가 불입하게 된다면 동 금액은 조세회피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된다.

다음은 DC형과 기업형 IRP의 추가납입으로 인한 조세회피 내지는 조세전략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DC형과 기업형 IRP에 한해서는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추가납입에 대한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3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1,200만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과거 이러한 한도부재로 인하여 고액의 연봉근로자들은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과세후금액(가처분소득)을 이용하여 DC형에 추가납입을 하여 은퇴후 시점에 이를 연금으로 활용한다면 운용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됨에 따라 원천징수 되지 아니하고 은퇴후에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가처분소득을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보다는 DC형이나 기업형 IRP에 추가납입을 통해 조세전략을 실현하였다.

가령 A라고 하는 근로자가 기업형 IRP 추가납입을 1,200만원을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한 4백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이미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추가로 공제받는 금액은 없다고 가정을 하자. 전액 IRP에 추가 불입하였다면 이는 동일 금액으로 타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펀드에 투자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세제상 유리한 측면이 있다.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5.4%로 원천징수되게 된다. 그러나 동 금액을 IRP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운용기간중의 이자소득은 비과세되어 이연되고 IRP 수령시에 비로소 과세된다. 이때 과세되는 금액은 1.2천만원에 대하여는 불입단계에서 공제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IRP 급여단계에서는 비과세되고, 과세되는 금액은 운용이익인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이때는 IRP의 급여를 연금으로 선택시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일시금으로 선택시에는 퇴직소득세로 과세한다.

통상 퇴직소득세는 이자, 배당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이 경우 고액연봉자는 일시금을 선호하게 될 것이며,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와 퇴직소득세의 차이만큼 조세의 절감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 추가 납입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IRP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기 보다는 조세회피 내지는 조세절세 전략에 활용될 수 있

30) 금융감독원(2013) 보도자료에 의하면 가입자 추가부담분은 DC형의 경우에는 6,948억원, 기업형 IRP는 4,279억원, 개인형 IRP는 1,257억원으로 총 12,484억원이다. 이것은 정기납입분 총액이 729,168억원인데 비하여 다소 낮은 편에 해당된다.

는 측면이 있다.

현행 규정을 살펴볼 때 1,200만원까지만 추가적으로 납입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금액은 매월 백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것과 동일한 금액으로서 추가적인 한도 금액이 너무 낮다고 할 수 있다.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금액의 납입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고액소득자의 경우에는 동 금액을 추가 납부하기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이며 개인이 납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추가납입의 금액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금액의 확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납입의 한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거 고액소득자들이 DC형과 기업형 IRP를 통하여 조세전략 측면에서 활용하기도 하나, 자칫 이를 남용할 소지가 있었다. 여유자금에 있는 고액소득자가 IRP 상품에 추가적인 납입을 통해 금융상품을 운용할 경우, 동 금액을 이자·배당상품에 투자시보다 세후소득의 증가를 꾀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은 저소득자보다는 고액소득자에게 세제절감의 유인이 있게 된다. 퇴직일시금 수령 후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되면 운용수익에 대하여 이자·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만, IRP에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하게 된다면, 운용기간 중에 원천징수 되지도 않고 퇴직시점에서도 운용이익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조세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이자·배당소득의 세율과 퇴직소득의 세율의 차이로 인한 고액소득자의 조세회피를 부추일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게 된다.

실제적으로 IRP에 가입한 상품이나 직접 투자에 운용되는 상품의 특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IRP에 추가 납입함으로써 조세전략 내지는 조세회피에 악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RP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유도하고자 하여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는 일시금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안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35세 근로자가 10년 근속을 가정으로 기업형 IRP에 5천만원을 추가 납입한 경우와 IRP에 가입하지 않고 동일금액을 연이율 5% 금융상품에 매년 재투자하였다고 가정하고 양자간의 세후순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이자소득세는 15.4%이며 IRP 수수료는 평잔 금액의 연 0.6%를 가정한다. 계산의 편의상 납입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일반상품 투자와 IRP의 추가납입에 대한 세제효과를 상호비교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기업형 IRP의 추가납입에 대한 세제효과

(단위 : 원)

구 분	일반 금융상품 이용한 경우	IRP 추가납입 한도 없는 경우를 이용한 경우
퇴직금	50,000,000	50,000,000
퇴직시점퇴직소득세	1,716,000	—
투자(저축) 원금	48,284,000	50,000,000

〈표 10〉 기업형 IRP의 추가납입에 대한 세제효과 (계속)

구 분	일반 금융상품 이용한 경우		IRP 추가납입 한도 없는 경우를 이용한 경우	
	10년 후 총자산	73,608,367	10년 후 총자산	81,444,731
10년후 수령 가정시	10년간 이자소득세	4,511,612	10년 간 IRP 수수료	3,867,702
			10년 후 퇴직소득세	2,808,040
	세후 순자산	73,068,572	세후 순자산	74,768,989
20년후 수령 가정시	20년 후 총자산	111,392,143	20년 후 총자산	132,664,885
	20년간 이자소득세	11,339,072	20년 간 IRP 수수료	10,167,781
			20년 후 퇴직소득세	4,586,870
	세후 순자산	110,575,267	세후 순자산	117,910,234

(주)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자료를 참조하여 수정한 것임.

2. IRP 운용도중 중도해지 가능에 대한 문제

IRP가 별다른 제약 없이 중도에 해지 가능하다는 점은 퇴직소득 이연과 통산 장치로서의 가장 큰 맹점을 지니고 있다. 가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자유롭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은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남아있게 되는 것으로서, IRP 운용기간 중 중도해지시에는 개인퇴직계좌 설정시에 부여받은 세제에 대한 혜택은 박탈된다. 그러나, 현행 IRP 중도 해지로 인한 패널티는 개인연금의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6월 선진국 형태의 다층노후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연금저축을 도입하였다. 그 이후 정부는 2000년 12월 연금제도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001년부터 새로운 개인연금 상품(연금저축)을 선보였다. 새로 도입된 연금저축은 기존의 개인연금저축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연금저축은 과세 방식이 E-E-T라는 점에서 T-E-E 방식을 취하고 있는 개인연금저축과는 다소 다르다.

무엇보다 2001년 연금저축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중도해지(일시금 수령) 시 부과되는 패널티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이다. 개인연금저축을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 단지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뿐이다. 다만,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도 환수된다. 반면 연금저축 가입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납입 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며, 특히 가입 후 5년 이내

에 해지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2.2%, 지방소득세 포함)가 함께 부과되어 중도해지(일시금 수령)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이 개인연금저축에서보다 훨씬 커졌다.

이렇듯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저축과는 다르게 중도해지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노후소득 확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현재 별다른 제약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IRP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산 장치인 IRP가 노후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55세까지는 해지(또는 인출) 없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IRP가 현행처럼 언제라도 세제상 불이익 없이 해지 가능하다면 중도에 적립금이 소진되어 유명무실한 통산 장치로 전락할 것임이 분명하다.³¹⁾ 퇴직급여의 대부분이 생활자금으로 중도에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된 IRP가 본래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55세 전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세제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가입자들에게 IRP를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뿐 아니라 당장에도 커다란 손실을 초래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3. 연금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일시금 선호의 문제점

가. 퇴직일시금 대비 연금선택에 대한 세제혜택 미흡

현행 퇴직금관련 세제상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퇴직일시금보다 불리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현행 퇴직금 제도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전환하게 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행 퇴직연금은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연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의 세부담의 차이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시점에 가급적이면 연금을 선택하기 보다는 일시금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현행 연금소득세제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나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 둘 세금의 부담액이 달라지면 근로자는 세금부담이 적은 형태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연금제도의 활성화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연금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는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더욱 커져 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을 선택하기 보다는 일시금을 선택하려고 하는 근로자가 더욱 많아 질 것이다.

공적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한 특수직역연금은 연금이나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 각

31)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중도해지가 많고, 연금보다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여 실제 노후자산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퇴직연금 IRP 만기유지율은 14%이며, 개인연금 10년차 가입유지율은 52%를 유지하고 있다.

연금제도 가입자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금이나 일시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즉 연금제도 가입시점부터 퇴직시점까지 부담금 납입에 따른 현금유출의 미래가치와 퇴직시점부터 사망시점까지 받게 되는 연금의 현재가치의 금액을 상호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것이다. 또한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과 매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연금이나 일시금을 선택할 것이다.

가령 질병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연금보다는 일시금 선택이 유리하다고 판단 할 경우 일시금을 선택하고자 할 것이다.³²⁾ 국민연금을 제외한 특수직역연금은 통상적으로 연금 개시후 7년이 경과하면 일시금과 비교하여 연금의 선택이 유리하다.³³⁾ 연금과 일시금의 총수입액을 비교한다는 것은 금리와 연금인상률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통상 연금수급기간이 7~8년여 기간이 경과하면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보다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유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으로 선택시 무작정 유리한 것이 아니라 퇴직후 적어도 7내지 8년 정도를 생존해야 연금이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출할 수 있다.

한편,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일시금의 세부담이 연금을 선택할 경우의 세부담보다 작게 되는 면이 있다. 현행의 세제기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근로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 기간이 짧을수록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상당히 유리하다. 결국 현행과 같은 세제가 유지되는 상황하에서는 은퇴자들이 퇴직급여를 굳이 연금으로 지급 받으려는 수요가 커질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가정을 달리하여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도 함께 지급 받을 경우를 가정하게 될 경우에는 연금소득 합산과세 대상금액이 커지게 되므로 연금 수령의 세제 혜택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퇴직 연금을 장기로 수령 받을 경우에도 65세 이후에는 국민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금소득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세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퇴직소득세와의 차이를 비교하면 <표 11>과 같다. 표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수령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금의 세 부담이 연금의 세 부담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하로 할 때 연금의 세 부담이 오히려 일시금의 세 부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일시금의 세 부담이 작은 이유는 일시금의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세액을 계산할 때 연분연승법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

32) 본인이 중병으로 인하여 또는 신체상의 문제로 인하여 연금보다는 일시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가 있다. 가령 매년 3천만원을 받는 퇴직자가 중병으로 인하여 향후 4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할 경우를 가정해보자. 현재 일시금으로 2억원을 받는 것이 은퇴후부터 사망시까지 매년 3천만원을 4년에 걸쳐서 받는 금액보다 크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일시금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3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연금공단의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용되지만, 연금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고소득자의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담 세액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현행 세제기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근로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 기간이 짧을수록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상당히 유리하다. 결국 이러한 세제가 유지되는 속에서는 은퇴자들이 퇴직급여를 굳이 연금으로 지급 받으려는 수요가 커질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현재의 가정을 확대하여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지급 받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합산과세 대상금액은 더욱 커지게 되므로 연금 수령의 세제 혜택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퇴직연금을 장기로 수령하고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65세 이후에 국민연금이 지급된다면 위의 표에서 나타난 연금소득세 부담보다는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표 11〉 퇴직소득 산출세액과 연금소득 산출세액의 상호 비교

(단위 : 원)

소득계층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			
		5년	10년	15년	20년
1분위	1,011,185	478,702	—	—	—
2분위	2,180,584	2,196,656	849,271	—	—
3분위	3,132,797	4,609,003	1,557,374	1,039,500	221,339
4분위	4,274,348	9,357,635	3,924,720	2,498,825	1,744,788
5분위	7,195,299	22,207,748	13,305,263	5,921,616	5,867,540

주) 최형준(2009), 황규영(2007) 및 김수성(2010) 연구자료를 참조함.

나.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으로 인한 퇴직연금제도의 일시금 선호의 문제점

최근 공적연금연계제도가 시행 되있는 바, 연계연금은 반드시 연금으로 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IRP의 상품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퇴직연금 등이 수급단계에서 연금을 선택하려는 유인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어 온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연계제도를 통해서 향후에는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퇴직연금에 대한 연금의 선택은 다소 부진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과거에는 연금의 사각지대가 있어 일정연환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적연금의 수급이 불가능하였다.³⁴⁾ 그러나, 최근 공적연금연계제도에 의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연계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

34) 공무원연금 등은 재직기간을 20년 이상 충족하여야 수급이 가능하였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10년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개정이 이루어졌다.³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민의 대다수가 공적연금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더욱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연금으로의 선택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은퇴시에 이미 공적연금제도를 통하여 일차적인 노후소득보장책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2층 연금체계로서의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을 선택하기 보다는 일시자금으로 소모하기 쉬운 일시금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공적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을 선택하려고 하는 반면,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일시금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공적연금은 연금으로 선택하는 경우 본인의 사망시에 수급하는 유족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소득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연금선택율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3층 연금체계로서의 개인연금은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시금을 선택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므로 22%의 세부담이 있어 과도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연금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은퇴자라면 은퇴시점에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선택을 선호하고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일시금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퇴직연금을 통한 추가적인 소득보장의 활성화는 현재보다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없다면 연금으로 선택할 유인이 부재하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연금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일시금 선택을 더욱 선호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 공적연금 지급정지제도로 인한 일시금 선호의 문제점

위에서는 퇴직연금 등의 제도가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인이 증가하는 반면, 다음에서는 공적연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인이 증가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적연금가입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 IRP를 통해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확보하였다고 생각할 경우, 그리고 은퇴후 추가적으로 사업이나 근로를 통해 추가소득을 얻고자 할 경우 공적연금에 대하여 일시금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현행 연금법에 따르면 공적연금의 수령자가 연금수급 기간 중에 일정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존에 받고 있는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된다. 연금제도 가입자는 연금소득과세가 퇴직소득과세보다 세부담이 높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퇴직시점에 수령 가능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IRP 등에 대하여 연금을 수령하기 보다는 일시금을 선택하려

35) 과거에는 국민연금과 직역(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간 연계제도 부재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었다. 과거 공무원으로 19년 재직 중인 자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9년 가입하더라도 총 보험료 납부기간이 28년에 달하더라도 가입기간 연계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연금을 수령하는 대신 퇴직일시금 및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는 연금 간 연계제도 도입으로 직업이동에 따른 노후불안이 해소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및 노후생활 소득보장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적연금연계제도를 참조할 것.

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연금을 선택시에는 공적연금 수령금액과 합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적연금의 감액으로 인한 부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소득의 세부담 이외에 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의 가중을 고려한다면 일시금을 선택할 수 없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기타 특수직역연금가입자는 연금을 선택하기 보다는 일시금을 선택하고자 할 것이다.

연계연금가입자와 국민연금가입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없는 제도적인 특성으로 소득심사제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하게 되지만,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이 있게 될 경우 그리고 정년 이후 추가적인 근로나 사업을 통해 추가소득을 얻고자하는 노동의욕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일시금을 선택하여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 그만큼 세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 때문이다.

4. 수령 가능한 연금의 종류가 많을수록 연금선택의 유인이 낮아지는 문제점

또 하나의 연금수급 선택 유인이 낮아지는 요인 중의 하나로는 은퇴시점에 수령 가능한 연금의 종류가 많을수록 연금선택의 유인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에 공무원 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퇴직금 제도는 1961년에 도입하였다. 그 이후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1994년에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1999년에는 퇴직보험제도 및 2000년에 퇴직신탁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에 대한 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2005년에 들어와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도입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태동시켜 노후생활의 소득보장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며,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은퇴시점에 이르러서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도록 각각의 제도를 태동시켰다.

그러나 각 연금제도는 본연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금소득 과세제도가 이러한 제도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즉, 연금소득 합산과세로 인하여 근로자는 수령 가능한 연금액을 추산하여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이 보장되었다고 생각이 되면³⁶⁾ 수령 가능한 연금제도 중에서 모든 급여를 연금으로 선택하지 않고 그 중에서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게 된다. 현재 연금법상 수령 가능한 연금과 일시금의 유형은 다음 <표 12>와 같다.

36) ILO 권고에 의하면 퇴직전 소득의 80%정도를 연금액으로 받게 되면 노후소득보장은 달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표 12〉 수령 가능한 연금과 일시금의 유형 비교

공적연금 가입여부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연계연금	연금 수령 가능 여부
국민연금 가입자	○	○	○	×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IRP 수령 가능 ³⁷⁾
특수직역연금가입자 ³⁸⁾	×	○	○	×	특수직역연금+연금저축 +IRP 연금 수령 가능 ³⁹⁾
공적연금 연계연금 신청자	○	○	○	○	연계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IRP 수령가능 ⁴⁰⁾
공적연금 연계연금 미 신청자	○	○	○	×	퇴직연금+연금저축 +IRP 수령가능 ⁴¹⁾

※ 본 사례는 현행 제도상 가능성을 파악해 본 사례임.

현행 소득과세체계를 살펴볼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보다 작고, 연금소득과세는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신고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일시금을 선택하려고 하는 유인이 있게 되어 이와 같은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수령 가능한 연금과 일시금의 상호비교를 연금소득과세의 합산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3>은 일시금으로 1억원을 수령할 경우와 매월 연금으로 1,000,000원을 수령할 경우로 가정하여 보고자 한다.⁴²⁾ 이때 일시금 1억원과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 백만원에 대한 세부담을 비교하기 보다는 모든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합산과세하는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

- 37)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자로서 퇴직금을 이용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중도퇴사후 재취업으로 인하여 IRP에 가입하였으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연금저축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였을 경우 : 은퇴 후에 수령 가능한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IRP연금, 연금저축에 대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 38)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퇴직후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면 2010.9.7 이후부터는 IRP에 가입이 가능하다.
- 39) 군인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였다가 퇴직하는 경우로서 퇴직수당을 지급받아 IRP에 가입하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연금저축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였을 경우 : 은퇴 후에 수령 가능한 연금은 특수직역연금과 IRP, 그리고 연금저축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40) 공무원으로 15년 근무하다가 중도 퇴사하여 민간기업에 재취업하여 연계연금신청을 신청하였을 경우로서 이때,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퇴직수당을 지급받아 IRP에 가입하고, 민간기업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연금저축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였을 경우 : 근로자는 은퇴 후에 연계연금과 퇴직연금과 IRP, 그리고 연금저축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41) 공무원연금에 15년 동안 가입하다가 중도 퇴사하여 민간기업에 재취업하여 9년여 동안 근무한 경우로서 연계연금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로 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을 지급받아 IRP에 가입하고 연금저축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였을 경우 : 은퇴 후에 수령가능한 연금은 퇴직연금과 IRP, 그리고 연금저축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42) 공적연금은 연금을 선택시에 적어도 7~8년을 수령하여야 일시금 수령한 금액과 동일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일시금을 1억원으로 매월 수령하는 연금을 1,000,000원으로 가정하였다.

하여 보고자 한다. 각각의 연금에서 국민연금(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함)과 특수직역연금(퇴직연금가입 불가)은 하나의 연금만 수령이 가능하며 퇴직연금, 개인연금, IRP에서 각각 모두가 백만원씩을 수령하는 경우의 세부담과 모든 연금에서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한 경우를 상정해 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 13>에서 볼 때, 연금액에 대하여 10,000,000원만 수령하게 되는 경우와 합산과세하는 경우에 대하여 연금소득 차액을 계산해 보면 3,047,000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각 연금에 대한 분리과세하는 경우의 세금부담은 1,188,000원이지만, 각 연금에 대하여 종합과세하게 되면 연금소득금액은 4,235,000원이 된다.

<표 13> 수령 가능한 연금과 일시금의 세부담 비교

(단위 : 원)

구 분		일시금 선택		연금 선택	
		수령금액	퇴직소득 과세금액	수령금액 (연간)	연금소득 과세금액 ⁴³⁾
연금소득 분리과세	국민연금·공무원연금등·연계연금	100,000,000	3,696,000	10,000,000	297,000
	퇴직연금	100,000,000	3,696,000	10,000,000	297,000
	연금저축	100,000,000	3,696,000	10,000,000	297,000
	IRP	100,000,000	3,696,000	10,000,000	297,000
	소 계	400,000,000	14,784,000	40,000,000	1,188,000
연금소득 합산과세	국민연금·공무원연금등·연계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	—	40,000,000	4,235,000

※ 근속연수는 10년으로 가정함.

IV. 연금소득 과세제도의 개선 및 세액공제 등의 확대 방안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부응하는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전화하기에는 다소 세제유인책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43) 총 연금액 10,000,000원에 대한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490만원+(총연금액-700만원)×20%를 공제한다. 또한, 총 연금액 40,000,000원에 대하여는 630만원+(총 연금액-1400만원)×10%를 공제한다.

확대뿐만 아니라 급여단계에서 의 합산과세 폐지, 종합소득금액에서 연금소득을 제외하는 방안, 연금세액공제의 확대 등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퇴직연금의 세제는 퇴직연금 자체만을 고려하여 연금세제의 체계를 개선을 검토하였으나, 향후에는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다양한 세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1. 가입단계의 세액공제 확대

가. DC형의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DC형/IRP에 대하여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규정은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소득공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행과 같이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의 모든 노후대비 저축을 납입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게 소득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개선안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014년에 개정된 연금저축 이외에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공제의 한도를 증액시켜 현재는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현재보다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세액공제의 수준을 개인연금 공제수준인 400만원과 동일하게 퇴직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하여도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⁴⁴⁾ 이와 같은 방법은 소득공제의 한도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하여 8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는 것이다.⁴⁵⁾

두 번째 방안은 근로자 추가 납입액을 확대하는 것이다. 확정급여형에서는 근로자 추가 납입이 가능한데 추가납입으로 가능한 금액이 너무 작아 이를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는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퇴직자는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더불어, 자영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의 가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2017년 7월 26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이 허용되었다.⁴⁶⁾ 이때에도 추가적인 납

44) 당초 이 법안은 권영세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을 제안한 법안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으나 2014년 개정세법에서는 이를 일부 반영하여 2015년부터는 개인연금 400만원과 퇴직연금 300만원으로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하기로 하였다.

45) 가령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이 600만원이고 개인연금의 추가 불입액이 200만원이라면 첫 번째 방안의 소득공제한도는 퇴직연금의 공제한도 400만원과 개인연금의 소득공제액 200만원을 합하여 600만원이 되나, 두 번째 방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추가불입액을 합하여 공제하므로 800만원이 된다.

46)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되었다. IRP는 퇴직 근로자에게 강제되고, 확정급여(DB)형·확정기

입한도를 1,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추가 납입에 대한 한도를 확대하여 실제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한 별도세제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⁴⁷⁾

현행 연금제도를 살펴볼 때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수단임에는 공통적으로 동일하나, 제도의 시행과 취지 측면에서 볼 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는 차이가 있다. 현행의 연금소득세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통합적 고찰을 감안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만을 고려하여 연금소득 세제를 구성하였는데, 향후 3층 보장 체제의 구축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연금 수령을 활성화하는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실질적인 혜택부여로 인한 개인형 IRP의 활성화 유도

IRP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내 IRP의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는 미국과 비교하면 세제 혜택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이 세금 혜택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IRA는 개인연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더 부과할수록 근로자가 IRA계좌를 통해 노후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의 IRP는 적립이 가능한 자금을 ‘퇴직금’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노후를 위한 대비 자금을 IRP를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추가납입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IRP는 DC제도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세제혜택인 ‘추가 납입금에 대한 연간 400만원 한도의 연금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된다. 결국 퇴직소득세 및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IRP를 해지하는 시점까지 미루는 세금이연 혜택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추가적인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IRA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누구나 추가납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납입으로 인하여 IRP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

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자와 자영업자(2017년 7월 26일부터 가입)도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정하고 있지 않다.

- 47)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에서 퇴직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한 별도세제 도입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별도 세제를 적용할 경우 가입의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 개인부담금 적립액은 2011년 2.5조원, 2015년에는 약 10조원, 2020년에는 약 20조원 정도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입의사를 표시한 자영업자들이 초년도에 100% 가입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가입률을 시나리오별로 접근한 결과 2011년에 개인부담금 적립액은 1.1조원에서 1.8조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이는 약 4.5년간 누적된 개인부담금(3,711억원)에 비해 적게는 3.1배 많게는 4.9배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을 것으로 본다.⁴⁸⁾ IRP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운용단계의 IRP 해지시 엄격한 패널티 부과

연금은 은퇴 후의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소득원이다. 우리나라의 연금 시스템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의 상호 보완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재정불안으로 소득대체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운영에 있어 기초보장과 소득재분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발적인 추가 저축이 요구되고 있다. 즉,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적연금의 하나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IRP이다.

궁극적으로 IRP는 퇴직연금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면서 전반적인 사적연금 시스템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인연금과는 달리 IRP에서는 개인이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사적연금으로서 IRP의 발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IRP 중도해지를 별도의 제재 없이 계속 허용한다면 통산 수단으로서의 IRP 역할이 무의미해지는 동시에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도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IRP 해지에 따른 세제상 패널티를 엄격하게 부과함으로써 무분별한 인출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해지에 따른 패널티 부과와 취지가 장기 가입을 통한 노후소득 확보에 있으므로 IRP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⁹⁾

3. 급부단계의 연금 선택 유인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가. 일시금 대비 연금선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목적 중의 하나는 현행과 같이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함으로써 기업의 도산시 지급불능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행 퇴직금 관련 세제상으로 볼 때, 연금

48) 미국에서는 1980년 개혁안을 통해 70.5세 이하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IRA에 추가 납입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만큼 세금 공제 혜택을 주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1982년부터 1986년 사이에 IRA의 적립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효과를 얻었다.

49) 미국의 경우 IRA 적립금을 59.5세 이전에 인출시 소득세 외에 별도로 10%(인출금액에서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기준)의 해지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일시금을 선택하였을 경우의 세부담보다 불리하여 근로자는 일시금을 선호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부담액이 일시금 선택에 대한 과세부담액보다 불리하여 연금선택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종합소득에서 연금소득을 배제하거나 합산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1) 연금소득을 종합소득 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

연금소득은 장기적인 근로를 통하여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온 적립금을 매년 연금의 형태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퇴직소득을 변형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항목에 편입되어 있으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한하여만 분류과세를 취하고 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온 결집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분연승법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연금소득세에도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서 종합소득 항목에서 제외하여 분류 과세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 등은 매년 발생하는 그해의 소득에 한하여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지만, 연금소득은 비록 매년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그 소득의 유형은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퇴직일시금을 연금의 형태로 전환하여 수령하는 것에 지니지 않는다. 그래서 퇴직소득과 유사한 방법으로 세부담이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소득세와 같이 분류과세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의 소득심사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후 추가적인 노동행위를 공급하고자 하여도 세부담이 가중된다면 추가적인 노동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세의 세목은 종합 퇴직소득(가칭)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퇴직소득과는 별도로 현행의 연금소득만을 종합하여 과세하되 퇴직소득과 같은 세부담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02년에 공적연금은 과세형태를 TEE에서 EET로 전환하였다. 과거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지 않고 급부단계에서도 과세하지 않았었다. 반면, 개인연금은 EET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정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인정하였다. 즉,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불입액의 40%와 72만원 중에서 적은 금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하였다. 개인연금은 2001년, 공적연금은 2002년, 퇴직연금은 2006년부터 연금소득에 편입되어 합산과세하게 되었으나, 종합소득으로 신고함에 따라 세부담이 가중되게 되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연금소득세만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블루프린트와 미드보고서 및 카터보고서는 연금소득과세방식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보고서에 해당된다. 이러한 보고서는 연금소득과세방식을 TEE에서 EET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고서에서는 연금소득의 합산과세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향후 각 연금제도에서 연금선택의 유인을 위해서는 종합과세에서 제외하여 연금의 누진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연금소득 합산과세 폐지하는 방안

연금소득과세는 2001년 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를 TEE에서 EET로 수정함에 따라 생성된 세목에 해당된다. 그 전에는 부담금 납입단계에서도 공제받지 못하였고 급부단계에서도 과세되지 않았다.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TEE에서 EET로 전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조세회피가 너무 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되었다.⁵⁰⁾ 그래서 연금소득 과세체계를 수정하면서 ‘연금소득’ 세목을 신설하였고 합산과세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퇴직자는 합산과세로 인하여 세부담이 가중되게 될 뿐만 아니라, 일시금 선택이 연금선택보다 세부담이 낮다는 것을 인식하여 은퇴후 수령 가능한 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일부 연금은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시금을 선택하려 하였다. 각 연금제도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태동되었다. 그러나 연금세제로 인하여 각 연금제도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 합산과세를 폐지하고 분리과세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위한 한도 증액

현행 조세법상 연금소득이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총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⁵¹⁾ 그러나 이 금액은 공적·퇴직·개인연금·IRP 등을 모두 합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금액이다. 분리과세를 신청하게 되면 연금수령액의 5.5%만을 납부하고 과세를 종결하게 되지만, 합산과세를 하게 되면 연금소득 이외에 추가소득과 합산과세 하게 되고 결국 종합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세부담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적·퇴직·개인연금·IRP 등에서 각각 1,200만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는 분리과세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공적·퇴직·개인연금의 급여를 합하여 연간 1,800만원 한도내에 해당하게 되면 합산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가급적이면 분리과세를 유도하여 종합소득 합산과세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50) 급여가 낮은 단계에서 비록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급여가 높은 단계에서 비과세되어 과도한 조세회피가 발생한다고 과세당국이 인식하게 되었다. 가령 근속연수가 낮은 입사초기에는 근로소득이 비교적 작고 월급여액이 작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적립할 금액 또한 적은 금액이다. 그러나 장기근속을 하게 되고 퇴직시점에 다가올수록 임금은 상승되고 퇴직금은 큰 금액이 되게 된다.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과거 퇴직전 3년간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상당한 금액에 이르지만 TEE의 형태를 띠고 있어 급여단계에서는 비과세하게 되어 조세부담을 하지 않은 소득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가령 근속연수가 낮은 입사초기에 20만원 정도 납부하였다고 가정하고, 은퇴 후에 연금을 200만원을 수령한다고 할 경우 단순히 물가상승을 감안하지 않고 매월 180만원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래서 과세체계를 EET로 전환하게 되어 추가적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도록 한 것이다.

51)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4) 퇴직소득에 대하여 고율 과세

고령화사회에 직면하여 은퇴후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시금의 선택보다는 연금의 선택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퇴직금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 수령이 항상 세제 혜택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연금 수령시 실제 세금부담이 크도록 과세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3%로 분리과세 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6~38% 과세된다. 퇴직소득금액에 정률공제(40%) 및 근속년수공제(1년당 30~120만원) 적용으로 퇴직자의 99.6%가 퇴직소득 실효세율 3%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연금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세부담이 작기 때문에 대다수 퇴직자는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세액 산정방식 변경을 통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수령에 것에 비하여 세액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액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소득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퇴직소득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고액퇴직자에 대해서는 일시금 수령시에 세금부담이 증가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퇴직소득에 대해 정률공제(40%)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자의 경우 퇴직소득 세금부담이 근로소득보다 높은 반면, 일부 고액연봉자의 경우 퇴직소득 세금부담이 현저히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저소득자들은 별도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기 보다는 연봉계약을 통하여 급여로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은퇴후의 노후소득보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직소득 정률공제(40%)에서 퇴직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⁵²⁾ 퇴직자의 대다수(98.1%)가 세금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일부 고

52) 2014년 8월 27일 발표한 2014년 개정세법(안)에 의하면 급여수준별 차등공제에 대하여 개정세법에 반영하였다. 개정세법에서는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를 위하여 과세체계를 개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퇴직소득 정률공제(40%)에서 퇴직급여 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공제율이 소득 수준별로 100%(환산급여 1,000만원 이하)에서 15%(환산급여 2억원 초과)까지 차등 적용된다. 구체적인 급여수준별 공제율은 다음 표와 같다.

환산급여	차등공제
0원 ~ 1,0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1,000만원 초과 ~ 3,500만원 이하	1,000만원 + (1,000만원 초과분의 90%)
3,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3,250만원 + (3,500만원 초과분의 70%)
7,000만원 초과 ~ 1.2억원 이하	5,70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0%)
1.2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8,200만원 + (1.2억원 초과분의 30%)
2억원 초과 ~	10,600만원 + (2억원 초과분의 15%)

액퇴직자의 경우 일시금 수령시 현행보다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⁵³⁾

나. 급여단계의 모든 수령 가능한 연금을 고려한 연금소득공제 확대

현행 연금소득 과세제도는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모두를 고려한 세제라고 보기에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다도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사적연금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세제상의 우선순위가 더욱 강하여 공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더욱 강한 편이며,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세제상의 우대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연금소득 과세를 모든 연금제도를 고려하여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의 선택을 퇴직시점에서 선택가능하다. 그러나, 공적연금제도를 살펴볼 경우 국민연금제도는 연금으로만 선택이 가능한 반면, 특수직역연금은 일시금과 연금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공적연금은 제도 특성상 유족연금까지 감안할 경우 비록 세 부담이 있더라도 일시금에 비하여 연금의 수령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어서는 대다수가 연금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즉, 공적연금에서는 일정기간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일시금을 선택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⁵⁴⁾ 또한,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에서도 제도 특성상 연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으로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선택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선택하면 기타소득세로 과세되어 22%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므로 연금소득에 비하여 세 부담이 크게 되기 때문에 더욱 연금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이미 공적연금을 받거나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선택하였다면 기업연금인 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하고 있는 연금급여는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시금으로의 선택을 선호 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금 급여 단계에서 소득공제의 한도를 현재보다 크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 부담의 완화를 위해 연금소득공제를 허용한다면 현재시점보다는 추가적으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선택하려는 유인은 감소할 것이며, 연금으로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금소득의 과세표준 구간 및 공제금액, 공제한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안종범(2008)은 퇴직연금소득은 근속기간 중의 근로소득의

53) 총급여가 2억원인 퇴직자의 경우에 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 실효세율이 현행 4.0%에서 8.1%로 증가하게 된다.

54) 공적연금에는 유족연금 급여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유족연금은 연금수급자가 사망시에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현재는 유족연금 급여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공적연금제도는 연금선택이 일시금의 선택시보다 더욱 유리하다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공적연금은 연금수급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다는 점과 유족연금으로 전환된다는 측면 때문에 연금급여를 선택하려 할 것이지만, 퇴직급여는 급여수령기간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을 선택하려 하기 보다는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일시금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일부를 노후를 위해 미래로 이연한 것으로 근로소득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연금소득공제액은 근로소득공제액의 60~70%수준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어 연금소득공제액의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퇴직소득세의 퇴직급여비례공제 비율을 낮추고, 연금소득세의 공제금액을 근로소득공제 수준으로 인상하여 연금소득이 퇴직일시금보다 세제상 불리한 구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퇴직소득세제를 일원화하여 연금소득세제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제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퇴직연금소득세(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퇴직연금의 다양화 방안 추진 : TEE의 과세방식 도입

미국에서 개인퇴직계정은 Koegh Plan⁵⁵⁾이나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이 기업연금과 동일한 세제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에 해당된다. IRA는 종업원이 퇴직금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경우 401(k) plan⁵⁶⁾과 같은 각출금 및 운용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이연되는 plan으로 소위 「확정각출형 개인연금」이라 할 수 있다.⁵⁷⁾ 이는 공적·기업연금을 수급시 부족한 노후생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1974년 ERISA⁵⁸⁾에 의하여 설립된

55) 미국의 개인연금 과세는 「각출시 비과세, 급부시 과세」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개인연금은 세제우대조치가 적용되는 적격상품(Qualified Product)과 그 이외의 세제비적격상품(non-Qualified Product)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키오플랜(Koegh Plan)과 개인퇴직계정(IRA)은 적격상품에 해당된다. Koegh Plan은 자영업자연금이라고도 하며 자영업자가 자기 자신 또는 종업원의 퇴직후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도까지 비과세로 적립이 가능한 plan으로서 1963년에 도입된 것이다.

56) 미국의 퇴직연금은 확정급부형과 확정각출형의 두가지 형태로 나란히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1978년에 도입된 401(k) plan은 내국세입법 401조 plan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세제상의 우대조치는 더욱 강화되었고 기업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401(k) 퇴직연금은 매달 일정량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되, 그 관리 책임은 종업원에게 있는 방식의 연금이다. 즉, 퇴직금의 지급을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퇴직연금제도의 일종이다.

57) 미국의 IRA는 Koegh Plan이나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이 기업연금과 동일한 세제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IRA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전통적 IRA (traditional or deductible IRA)로서 불입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되며, 퇴직시까지 증식되어 과세가 이연된다. 반면, 소득공제는 되지 않지만 적립금의 비과세 증식으로 과세가 이연되는 교육 IRA (educational IRA)와 전통적 IRA의 자격이 없는 고소득층에 적합한 비소득공제 IRA(nondeductible IRA)가 있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되지 않지만 적립금 소득을 완전히 비과세하는 Roth IRA가 있다. IRA는 종업원이 퇴직금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경우 401(k) plan과 같은 각출금 및 운용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이연되는 plan으로 소위 「확정각출형 개인연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공적·기업연금 수급시 부족한 노후생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1974년 ERISA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각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적립하는 보험료는 일정액 만큼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58) 미국은 1935년에 공적연금인 노령·유족·장해보험(OASDI :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것으로 각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적립하는 보험료는 일정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나 근무처에 기업연금제도가 없는 근로자 등에 한하지 않고 70.5세 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동시에 소득공제범위가 연간소득의 15%로 적용되어 광범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IRA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401(k) plan의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에 다른 401(k) plan에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그 적립액을 퇴직후 일정기간에 다른 IRA에 전환하면 비과세로 이관할 수 있다. 이를 「Rollover IRA」라고 한다.⁵⁹⁾ 이는 통상의 IRA와 다르게 산정된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각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Rollover된 적립금의 운용이익에 대한 과세는 급부시까지 이연된다.

또한 1997년에는 납세자구제법에 의하여 상원의원인 윌리엄로스(William Roth)가 제안한 「Roth IRA」라고 하는 신행태의 IRA가 있다.⁶⁰⁾ 이것은 각출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하지 않고 세후소득에서 각출하는 것으로 전술한 IRA와 큰 차이가 있다. 다만, 급부시에 있어서 그 급부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Roth IRA」는 소득공제는 되지 않지만 적립금 소득을 완전 비과세하는 제도이다.

문성훈(2010)의 연구에서도 미국의 퇴직연금제도인 Roth IRA 제도와 같은 과세방식을 도입해 볼 것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IRP는 납입시점에 소득공제를 통해 비과세되고, 운용과정에서도 비과세된 후, 인출시점에 이르러 과세되고 있는 EET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Roth IRA제도는 납입시점에 과세하고, 운용 및 인출시점에 비과세되는 TEE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현행 IRP제도가 운용시점까지 비과세되었다가 인출시점에 과세하는 방식이지만, 고려되고 있는 Roth IRA는 근로자의 선택 폭이 더욱 다양해져 기존 IRP제도에 비하여 많은 이점이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연금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된다. 즉, Roth IRA는 은퇴후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적인 근로자보다는 은퇴 후 소득이 증가하여 오히려 은퇴 전에 과세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에 해당되므로, Roth IRA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유도를 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은퇴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할 수 있다는 장

가 창설되었으나,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1974년에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 :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을 제정·시행하였다. 기업연금은 ERISA의 시행과 각종 법안의 마련으로 급격히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59) IRA는 다른 IRA로 쉽게 이전을 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를 말하는데, Rollover IRA는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IRA를 또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더 높은 이자나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으로서 투자의 유연성(investment flexibility)과 이전성(portability)이 용이한 특성으로 인하여 최근 부부에 대한 IRA와 Roth IRA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60) 전통적 IRA는 소득이 너무 높지 않다면 매년 들어가는 적립금에 대한 공제혜택이 있다. 그러나 나중에 인출할 때는 모두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적립하는 동안 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출시 세금을 부과도록 하고 있다. 반면, 로스 IRA는 적립할 때 공제혜택이 없는 반면, 인출시에도 비과세한다. 인출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계좌가 최소한 5년 이상 유지된 상태여야 하고 59.5세가 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점이 있게 된다.

V. 결 론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국민연금, 1994년 개인연금, 그리고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소위 3층보장체계(Three Pillar System)를 구축하였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안정과 기업 도산시에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퇴직연금의 도입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하는 바, 현행 제도는 연금으로의 수령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다. 이와 같이 도입수준이 낮고 은퇴 후의 노후소득보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퇴직연금의 장점에 대한 인식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퇴직소득과 연금소득간의 불합리한 세제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의 특성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요인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아울러 세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현행과는 다른 가입단계에서의 세제혜택 부여와 급여단계에서의 합산과세를 폐지하고, 분리과세를 유도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즉,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현행 개인연금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급여단계에서는 연금소득공제의 한도를 증액하며, 가급적이면 분리과세를 유도하도록 분리과세 금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이를 통해 연금소득세제가 퇴직소득세제에 비하여 세부담이 크지 않고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금소득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강화와 장기적인 국가재정의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과세체계는 기본적으로 EET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시금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 과세를 하고 있는데 연금소득 과세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일시금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거나 연금소득 세제를 개선하는 등 퇴직연금 관련 세제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퇴직연금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는 개인연금과 별도로 세액공제를 인정해 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직일시금 대비 연금선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연금소득 공제금액을 우선적으로 인상하여 향후에

는 근로자들이 일시금 보다는 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연금제도가 태동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입단계에서부터 급여단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세제혜택과 세제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비로소 노후생활에 필요한 3층소득 보장체계가 구축되고 이를 통해 노후의 안락한 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세제개선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므로 정부의 폭넓은 세제혜택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석범. 2008.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 방안”. 국제회계연구 제24집 제4권 : 53-74
- 김수성. 2010.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소득과세 개선 방안” 조세연구 제10-1집 : 378-422
- 김진수·배준호. 2006. “퇴직연금의 정착을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세무학연구 제23권 제3호 : 257-289
- 김진수·김재진. 2007.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류건식·김대환. 2012.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세제개선방안”. 손해보험 통권 제519호 : 28-43
- 문성훈. 2010. “펀드 및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 개선방안”. 2010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345-395
- 문성환. 2006.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 안종범. 2008.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의 필요성과 세제개편방안”. 금융감독원 조사연구 Review 제24호 : 1-34
- 최형준. 2009. 「퇴직연금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 황규영. 2007. “퇴직연금의 조세효과 및 연금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8권 제2호 : 57-87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
-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www.ppsl.or.kr)
- 社會保障研究所, 1993, 『リータイソクス日本社會保障 3 年金』, 有斐閣
- Meade Committee, The Structure and Reform of Direct Taxation. 1978.
- Blueprints For Basic Tax Reform, Bradford, 2nd edition, 1984.
- Royal Commission On Taxation Vol 3, Taxation On Income, 1966.

Improvement on Tax Incentives for Selecting a Pension in an Aging Society

Seong-Hoon Moon* · Su-Sung Kim**

〈Abstract〉

To face the aging society, the income security after retirement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in the past. The income security for one's later years should be provided at personal level as well as at the national level through a variety of methods of the pension system. Through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t the national level, the retirement pension scheme at the commercial level, and the personal savings pension at individual level, a three-layer security system is built, and the personal portable pension system called the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hereinafter) is prepared for those with high employee turnover. Although the three-layer pension system is provided by the government, in case of having other income source, receiving a lump sum is considered favourable than a pension due to the fact that the current taxation applied on pension income included in comprehensive income tax creates relatively unfavourable tax burden compared to retirement income tax. In case of receiving a lump sum, it is classified as retirement income tax whereas receiving a pension is taxed as comprehensive income; because the pension income tax is imposed on the combined pension income, the tax burden resulted in comprehensive income tax is relatively heavy compared to the retirement income tax. Therefore, a retiree receiving several different pensions has the incentive to choose to receive a lump sum for some of pensions rather than receive them all as pensions. This can be contrary to the government policy that is set to secure the income after the retirement through a three-layer pension system.

On the basis of such issues, this study, through a unified view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e retirement pension scheme, and the personal savings pension, states the need of strong tax incentives on the pension income, and also suggests improvements for selecting a pension by pointing out problems of current pension income tax system. The pension scheme needs to be designed to achieve its original purpose by providing broader tax incentives from the initial subscription to the final receipt. In this study, it suggests the need to strengthen the incentives of the pension in order to secure income after retirement. In other words, it attempts to prevent the exhaustion of the pension in a way of receiving lump sum in advance by providing a way in which receiving a pension is likely to be selected. To this end, this study, by the way of categorizing each phases in the subscription

* Associate Professor, Hallym University,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mooncta@hallym.ac.kr, First Author

** The Korean Teachers Pension, Ph.D of Science in Taxation, mercury@tp.or.kr, Corresponding Author

likely to be selected. To this end, this study, by the way of categorizing each phases in the subscription phase, operational phase, and receiving phase, attempts to present problems and solutions for each phases.

As alternatives to the results, those are increasing the limit of tax credit in the subscription phase to attract the subscription of pension, imposing heavy penalties in the operational phase to avoid termination, and providing favourable tax incentives in the receiving phase to place separate taxation if possible. In addition, it also considered that, for those pension incomes taxed in comprehensive income tax are to be exempted, or to seek a way to classify and treat them separately. Through those measures, there is much likelihood to reduce the incentive to choose a lump sum, yet to increase the incentive to choose a pen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substantive tax incentives (incentive) through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e retirement pension scheme, and the personal savings pension. Therefore, this study, in a way of considering improvements of tax incentives on the pension system based on the comprehensive review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he personal savings pension to promote the selection of pension in an aging society, can be said significant.

<Key word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e retirement pension scheme, the personal savings pension, pension savings, pension income tax, pension taxation, retirement income tax